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19
----------	-------

발의연월일 : 2026. 6. 5.

발 의 자 : 김주영 · 이학영 · 김태선
박민규 · 박수현 · 박해철
안호영 · 강득구 · 박 정
박균택 · 신정훈 · 정태호
박홍배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산불 등 기후재난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강도가 점차 강해짐에 따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은 기후위기 대응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세계기상기구(WMO)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 국제사회는 보다 정교한 기후변수 관측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음.

또한, 기후변화가 미치는 물리적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 특성, 이상기후·극한기후 현상의 인위적 영향 분석 및 과학적 원인 규명 등 기후변화 실태 및 미래 전망과 영향정보를 기반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감시·예측 체계 강화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수집·분석·생산해야 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에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포함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관계 조사·연구의 범위를 홍수, 가뭄, 산불 등 사회 전 분야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의 특성을 정밀하게 조사·연구하도록 확장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제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핵심기후변수, 기후영향인자의 종합적 생산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분야별 감시·예측·영향 정보를 기반으로, 범정부 차원의 미래 기후위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15조제1항 신설 등).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기후영향인자”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홍수, 가뭄, 산불 등 기후재난의 발생으로 환경·사회·경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인 기후조건을 말한다.

제7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가 정하는 분야별 핵심기후변수
5. 기후영향인자

제15조제1항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기후영향인자 특성

제1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후변화 및 극한기후의 발생 원인에 대한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의 분석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9.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u>“기후영향인자”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홍수, 가뭄, 산불 등 기후재난의 발생으로 환경·사회·경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인 기후조건을 말한다.</u></p>
<p>제7조(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책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분석·생산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제7조(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①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가 정하는 분야별 핵심 기후변수</u></p> <p>5. <u>기후영향인자</u></p>
<p><u><신설></u></p>	

